기업지배구조헌장

2022. 08. 09.

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

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기업지배구조헌장

제정: 2022. 08. 09.

전 문

동일고무벨트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, 존중과 신뢰의 노사문화 위에 건전한 기업시민으로서 대내외적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.

회사는 이 헌장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주주, 고객,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증진하며,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경영으로 지구와 인류를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.

제1장 주주

제 1 조 주주의 권리

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여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.

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.

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,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,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.

④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,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.

⑤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,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.

제 2 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

① 주주는 1 주마다 1 의결권을 가지며,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.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②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, 회사는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.

제 3 조 주주의 책임

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,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.

제2장 이사회

제 4 조 이사회의 기능

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,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③ 이사회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

제 5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

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여야 하며,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.

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,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.

③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,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.

④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6 조 사외이사

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,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.

②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,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한다.

④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·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 7 조 이사회의 운영

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, 최소한 분기별로 1 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.

②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,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한다.

③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유지·보존한다.

④ 회사는 필요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 8 조 이사회내 위원회

①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적정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내 위원회는 가급적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조직,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한다.

제 9 조 이사의 의무

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.

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,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.

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,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.

제 10 조 이사의 책임

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,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 3 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.

②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,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,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.

③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,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 11 조 평가 및 보상

①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, 그 평가결과는 보수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.

②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.

제3장 감사기구

제 12 조 **감사위원회**

① 회사는 내부감사기구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, 감사위원회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
③ 감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1 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, 필요한 경우 경영진, 재무담당임원,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한다.

⑤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.

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.

제 13 조 **외부감사인**

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한다.

③ 외부감사인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검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
④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이해관계자

제 14 조 **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**

①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
② 회사는 소비자 보호,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③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,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.

④ 회사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.

⑤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, 감자, 분할·합병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.

⑥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.

⑦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제 15 조 윤리경영

① 회사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게시한다.

② 회사는 경영활동에 있어 윤리규범을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.

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

제 16 조 공시

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.

②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공시한다.

③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,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.

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춘다.

⑤ 회사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책임자는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인증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회사 경영권 시장

① 회사의 인수, 합병, 분할,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.

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.

③ 회사는 합병,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.

부칙

시행일

이 헌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2 년 8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